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1974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2002년까지 매년 한우 입식자금, 양봉사업, 원예작물재배 자금등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나. 농가소득 자금지원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총괄하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융자 및 보조사업이 있고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이 있어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다. 군의회 임시회(2003. 7. 9)시 의원님들의 군정질의를 통해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은 70년대 새마을운동에 맞는 것으로 현재에는 동 사업이 시대에 동떨어져 효과성이 적은 제도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 등으로 2003년부터 융자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며 2007년과 2008년 군정질의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음

라. 2002년 마지막 융자지원된 회수금도 2007년 12월말로 상환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는 미납분에 대한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미납된 융자금(17건 35,500천원)도 회수불가능분을 제외하면 완료되어가는 시점이라 당초취지의 사업목적은 완료된 걸로 볼 수 있어 특별회계지원사업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함.

나. 제4장 특별회계지원사업의 삭제

- 제23조 내지 제26조 삭제

□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라. 관련법령 : 해당없음

마.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바.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4장 특별회계지원사업 제23조 내지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명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4장 특별회계지원사업	〈삭 제〉
제23조(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삭 제〉
제24조(세입·세출)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삭 제〉
제25조(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준용)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삭 제〉